



#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

## - 재판절차 -

2024. 10.

사법정책자문위원회

### I. 대법원장 1차 부의 안건(재판절차)

- 1) 감정제도 개선(完)
- 2)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(V)
- 3)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(V)

### II. 안건별 개요

#### 1.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

##### 가. 논의의 필요성

###### ■ 공판중심주의의 의의

-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소송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공개된 법정에서 조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관의 심증을 토대로 피고인의 유·무죄 및 양형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

###### ■ 실무상 문제점과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 필요성

- ① 복잡한 형사사건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 필요성
  - 현재 ①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준수 필요성, ② 증거분리제출의 실무상 어려움으로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 대부분의 증거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함



- 통상적인 사건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, 쟁점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파악 및 심증형성의 어려움, 법관의 심리 주도권 약화 → 재판의 비효율 및 지연 발생
- 예컨대 서증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가 필요한 증인과 불필요한 증인을 구별하기 어렵고, 수십, 수백 명의 증인을 분류 없이 소환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비효율과 절차 지연이 발생함
- 복잡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양측의 무분별한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가 지연되어 외부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 →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해결책 모색 필요

### ● ②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질화 필요성

- 現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사건의 특성 및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고,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간이공판절차도 여러 이유로 활용도가 저조함
-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든 증거에 대한 낭독·제시 등을 거치게 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에 반함
-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를 통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실질화하고, 효율적 심리를 통하여 확보된 사법자원을 엄격한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

### ● ③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 필요성

- 현행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실무상 재판 중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신병 확보가 사실상 어렵고, 불출석 재판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일률적으로 과도한 행정 조치가 필요함
- 피고인의 귀책사유 및 절차 보장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



## 나. 주요 쟁점

### ■ ①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

-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심리모델을 수립·공유하여 공판중심주의의 적절한 운영 도모
- 증인조사·서증조사의 효율화 방안, 수사기록 열람·복사 개선 방안, 녹음·녹화물에 대한 증거조사 및 공판절차의 갱신절차 효율화 방안 검토

### ■ ②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를 통한 공판중심주의 실질화

- 자백뿐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간이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검토

### ■ ③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

- 불출석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분명하고 재판 진행 단계를 고려할 때 절차 보장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」상 불출석 재판의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적 개선 방안 검토

## 다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### ■ ① 복잡한 사건에서 공판절차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

### ■ ② 공판중심주의 실질화를 위한 간이공판절차 요건 재설계 방안 검토

### ■ ③ 피고인 불출석 재판제도 개선방안 검토

## 2.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

### 가. 논의의 필요성

#### ■ 민사항소심 재판의 장기화

- 미제, 장기미제율 증가

- Covid 19 무렵인 2020년 전후로 처리건수가 급감하여 미제가 대폭 증가하



였고, 장기미제율은 상당히 증가함 ⇨ 2022년부터 처리건수는 회복 중이나 새롭게 접수되는 사건으로 인해 쌓인 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

● 처리기간 증가

- 미제사건 증가에 따른 사건 적체로 인하여 첫 기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및 종국까지 소요되는 기간 또한 대폭 증가하였음

● 장기미제 사유 중 ‘증거조사의 지연’이 최다

- 증거조사의 지연(30% 내외)은 통상적으로 감정절차나 사실조회, 증인소환 등의 지연 등에 따른 경우와 당사자가 뒤늦게 증거를 신청함에 따른 경우가 많음

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

- 전 세계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 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사후적으로 재심사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립되고 있음

- 미국, 영국, 독일, 오스트리아, 일본 등

- 국제민사소송에서도 갱신권을 제한하고 「하자통제」로서의 항소심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

- 「국제민사소송원칙」(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), 「유럽 모델 민사소송규칙」(Model European Rules of Civil Procedure)

- 모두 ‘갱신권’을 제한 → 사실인정의 임무를 제1심 법원에 집중 ⇨ 항소심에서 경제적이고 신속한 재판 구현’ 형태

■ 2025. 3. 1.부터 ‘항소이유서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(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달 연장 가능)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결정’을 하여야 하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시행 ⇨ 이를 계기로 민사항소심 재판이 장기화되는 현상을 해소하고,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심리방식으로 개선할 필요



## 나. 주요 쟁점

### ▣ 민사항소심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

### ▣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

- 과거의 항소심 심리방식 개선 노력, 현재 변화된 환경(변호사 수 증가, 소송대리 비율 상승, 1심 재판장 경력 상승 등)
- 항소이유에 집중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+ 사건 유형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 확보 ⇨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보장

### ▣ 구체적인 심리모델 및 규칙 개정안 마련

- 항소이유의 분류, 항소이유서 제출기간, 답변서 제출
- 쟁점의 조기 현출을 토대로 한 사건 분류 및 적합한 심리방식 선택
- 증거의 일괄 제출 및 집중 심리, 항소심 역할에 맞는 증거채부 기준
-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기능을 강화한 판결서 작성 방안 제시

## 다.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

### ▣ 민사항소심 심리모델 개선방안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검토